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08도9621 가. 공직선거법위반

나. 명예훼손

피 고 인

1. 허■■■ (■■■■■-■■■■■), ■■■■■

주거 서울 ■■■■■ ■■■■■-■■■■■

(■■■구치소 재감중)

등록기준지 서울 ■■■■■ ■■■■■-■■■■■

2. 강■■■ (■■■■■-■■■■■), ■■■■■

주거 울산 ■■■■■ ■■■■■-■■■■■

등록기준지 인천 ■■■■■ ■■■■■

상 고 인 피고인들

변 호 인 변호사 박■■■ (피고인 1을 위하여)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노1393 판결

판 결 선 고 2008. 12. 24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피고인 혀[■■■]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.

이 유

1. 피고인 허[redacted]의 상고이유를 본다.

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인바,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. 그리고 채증법칙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2. 피고인 강■■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,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.
 3.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피고인 허■■■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_____

대법관 박시환 _____

주 심 대법관 박일환 _____

대법관 김능환 _____